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. 7. 18 선고 2017가단161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 새마을회

변론 종결 2018. 6. 27

판결 선고 2018. 7. 1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[별지 1]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 중 [별지 2] 참고도 표시20내지 23,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96㎡를 철거하고, [별지1]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 중 위 (나) 부분 96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가 [별지 1]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소유하는 사실, 피고

소유인 [별지 1]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 중 [별지 2] 참고도 표시 20내지 23,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96㎡(이하 '이 사건 계쟁부분'이라 한다)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에 대한 감정축타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해 피고는, 과거에 이 사건 토지를 이전 소유자인 C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여서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던 중 1999. 3.24.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는바, 피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해 사용하고 있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

다.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임현준[별지 1]

별지